

의안번호	2213004
의 퇴 인	안호영의원
회 답 일	2025.12. 9.
추계번호	25B505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기준(이하 이 조에서 “포장기준”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포장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료 수집 2. 포장기준 위반 의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3. 포장기준 관련 통계 작성 및 이행실태 분석 4. 포장재 감량·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자문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그 밖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의5(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장기준의 이행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재활용 촉진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현행법은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제품·수송(택배) 포장 규제를 시행 중¹⁾이며, 1회용 택배 포장에 대한 규제²⁾는 2024년 4월 도입된 후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³⁾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예산에 한국환경공단이 1회용 택배 포장 등 포장방법·재질에 관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 1)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告示)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미만인 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포장기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표 1] 1회용 택배 등 포장검사 관련 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코드명)	내역사업	2025년	2026년
한국환경공단 출연 (1534-303)	과대포장 및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검사	·과대포장 검사: 4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29 ·검사기기: 99	·과대포장 검사: 70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29 ·검사기기: 99 ·수송포장검사: 150

주: 수송포장검사 산출내역 1,893건 × 7만 9천원

1,893건 = 7개 제품군¹⁾ × 149개 사업체²⁾ + 850건(2024년 기장자치단체 포장명령 검사건)

7만 9천원 = 제품 구입비(6만원) + 배송, 폐기 비용(1만 9천원)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기재된 포장기준 준수 대상 품목(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2) 기업 정보 검색 서비스 엔진(ROA engine)을 통해 분류된 국내 주요 유통사업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포장기준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설치되는 제품포장관리 지원센터의 조직 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가 신설될 경우 1회용 택배 포장 등 포장기준 이행 여부 점검 업무를 연 3회(반기 각 1회+수시1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